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0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 소량화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량제 규격봉투 신규 제작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 용량별
용도 추가(안 별표 1, 안 별표 2)

- 나. 50ℓ 이상 생활 종량제 규격봉투 무게 상한 규정(안 제9조)
- 다.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수수료 조정(안 별표 3)
- 라. 대형폐기물 신고지를 전 동주민센터로 변경(안 제9조, 제27조, 제29조)
- 마.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안 제30조)
- 바.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관련 조항 정비(안 33조, 안 34조)
-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소용량 생활 종량제 봉투와 유통매장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용량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 현 조례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중 누락 또는 유사품목과

신규 품목을 정비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의 지침1)에 따라 종량제 봉투 규격에 의한 무게 상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관할 동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안 제29조제4항제2호 동일)
- 안 제30조제3항의 가산금 징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 안 제33조, 안 제34조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 하였으며,

1)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6.11.10)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구분	50ℓ 봉투	75ℓ 봉투	100ℓ 봉투
환산무게	13kg(12.5)	19kg(18.75)	25kg

-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안 별표 5,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3조제4항의 별표1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 봉투 2ℓ를 60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3ℓ를 9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였고,
- 안 제15조제2호의 별표2에 용량별로 2ℓ에 생활폐기물용, 3ℓ, 5ℓ, 10ℓ, 20ℓ 30ℓ에 재사용 용도표기를 추가 하였으며
- 안 27조제1항제2호의 별표 3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표의 기존 총 108개 품목에 79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하고, 기존 26개 품목을 세분화 하여 43규격을 신규 추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유사품목 5개 품목을 삭제 통합하여 총 182개 품목으로 정비하였으며 폐소형가전 36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15개 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또는 소 가구 주택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과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품목 인상은 매년 수수료 수입에 대비하여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2006년 이후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최근 수수료를 개정된 자치구와 비교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일부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수료 인상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부담 등을 고려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신규추가 및 삭제, 폐가전 무상수거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등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목에

“연도별 규격봉투가격” 을 “규격봉투가격” 으로 변경하고 2015년도 항목과 비교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